

제 378 호

1973-6-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777 호 :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제 1309 호 : 서울특별시 경찰행정 자문위원회규칙
개정규칙 4

◎ 고 사

제 9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변경승인... 10

◎ 공 고

제 117 호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10

◎ 사 령.....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재해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77호

서울특별시재해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재해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간사장등) ①위원회의 사무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
인을 두되 간사장은 비상계획관이
된다.

②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과장이 서기는 방재계장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수석위원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간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및 개최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출석위원의 명단
3. 회의 및 회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의 2 (통제관등) ①재해대책업무
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과 제 1 부시장 및 제 2 부시장 밑에
통제관 1 인을 두되 통제관은 비상계
획관이 된다.

②통제관 소속하에 행정반, 예보반,
정보구조반, 통신반, 보급반, 보도반,
수송반, 구호반, 복구반등을 두되 각
반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경찰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장 양택식
197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09호

서울특별시경찰행정자문위원회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경찰행정자문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행정에 관하여 경찰국장과 경찰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국과 각 경찰서에 경찰행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경찰국에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행정자문위원회(이하 '경찰국위원회'라 한다)를 경찰서에 각각 그 경찰서의 명칭을 붙인 경찰행정자문위원회(이하

하 '경찰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첩방법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협조를 요하는 범죄수사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4. 민경친선에 관한 사항
5. 경찰행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찰국장 및 당해 경찰서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며 그 관할구역과 유관한 인사중에서 관서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 1 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서를 받고 별표 제 2 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관서장의 회의소집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서장과 위원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3 일전까지 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관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참고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각 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 (간사와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 경찰국 위원회의 간사는 경무제장이 서기는 경무담당 경위가 되며 경찰서위원회의 간사는 경무과장이 서기는 경무담당경사가 된다.

제 9 조 (회의록등 비치) ① 각 위원회에는 별표 제 3 호 서식에 의한 위원명부와 별표 제 4 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은 주무과장 또는 관계과장의 회람에 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귀하가 요청한 ○○○경찰국(서) 경찰행정 자문위원회 회의 위원직을 수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본 적

주 소

근 무 처

성 명

전 화

생년월일

○○○경찰국(서) 장 귀하

별표 제 2 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 경찰국(서) 경찰행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경찰국장 ○ ○ ○

(서울특별시 ○ ○ ○ 경찰서장 ○ ○ ○)

별표 제 3 호 서식

위 원 명 부

| 부 | 서 | 성 | 명 | 연 | 령 | 직 | 업 | 비 | 고 |
|---|-------|---|---|---|---|---|---|---|---|
| 위 | 장 | | | | | | | | |
| 부 | 위 원 장 | | | | | | | | |
| 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 4 호 서식

| | | | |
|-----------|---------|---------|--|
| 개 회 년 월 일 | | 장 소 | |
| 참 가 위 원 | | | |
| 의 제 | 토 의 내 용 | 처 리 내 용 | |
| | |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9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 및
지적 변경 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호(72.7.13)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37.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1973. 6. 1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 변경조서

| 구 분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원 M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기 정 | 소 로 | 3 | | 6 | 130 | 미아동 | 미아동 | 36 구간 폐지 |
| 변 경 | " | 3 | | 6 | 137 | 847-1 | 839-304 | 43 구간 신설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 1. 서울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일부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제 45 조 제 2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1973. 6. 15.

서울특별시장

| | |
|---|--|
| <p>1) 사업집행지 : 시내영등포구신림동 산 161-2의 8 필</p> <p>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p> <p>3) 준공면적 : 7,941.8 평 (총면적 23,732평중)</p> <p>4) 사업시행자 : 시내용산구이촌동 300-23호 강병두</p> <p>5) 사업기간 : 착공 : 71.5.20 준공 : 71.9.30</p> <p>6) 부분준공년월일 : 73.6.15</p> <p>7) 부분준공도면 : 별첨도면 (생략)</p>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사 령</div> <p>◎ 1973.6.15.</p> <p>마포병위(약제과장) 지방약무기과 최갑래 중부병위 약제과장에 포함.</p> <p>중부병위(약제과장 지방약무기사 박홍진 직무대리)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영등포보건소 지방약무기사 노재영 지방보건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현 세정과 세정계장에 포함.</p> |
| <p>서울특별시장</p> | |